

개정 전	개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소)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 10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○ (추징요건) 5년이내 수익사업시 1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소) <u>주민세 감면 종료</u>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 ○ (추징요건) 5년이내 수익사업시 <u>1년(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)이내</u> <u>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</u>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
<p><⑦ 제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§91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특례내용) 취득세 2%(저율) 세율 적용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감면 종료</p>

< 개정내용 >

- (①)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
- (②)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교육·문화 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,
 - 일반적 추징규정 외 완화된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합리화
- (③) 지역공동체 나눔·돌봄 활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④) 한국자유총연맹은 감면 종료
- (⑤)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
- (⑥)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감면 3년 연장하되,
 -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및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감면 종료